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586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이양수・서천호・이인선

최형두 • 박덕흠 • 이종배

조경태 · 김소희 · 정희용

배준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우리나라 어촌은 도시·농촌에 비해 고령화 심화와 급격한 어가인 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, 열악한 정주 여건, 양질의 일 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 진입이 어렵고, 청년들도 어촌을 떠 나는 상황임.

이에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항의 효율적 이용·개발 여건을 마련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음식점,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이 어항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어항을 어업 기반 시설 외 관광, 레저, 문화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.

또한 체계적인 어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단계를 구분하고, 어 항시설 및 어항구역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항시설 및 어 항구역 내 금지행위의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 임

주요내용

- 가. 어민들의 편의성 제고 및 검사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어항시설의 '기능시설'에 '어선 검사장'을 추가하고,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'어항편익시설'에 '휴게음식점', '일반음식점', '제과점', '쇼핑센터'를 추가함(안 제2조제5호).
- 나. 어항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어항의 부가가치와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어항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'어항배후지역'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5호의2 신설).
- 다. 어항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'어항개발계획'을 '어항개발기본계획'과 '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'으로 구분함(안 제19조 및 제23조 등).
- 라. 어항의 기능 저해, 각종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항시설 또는 어항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출입통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45조, 제46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어촌 · 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촌 · 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가목2) 중 "물양장(物揚場)"을 "소형선부두"로 하고, 같은호 나목3) 중 "건조장·수리장"을 "건조장·수리장·검사장"으로 하며,같은호 다목3)부터 7)까지를 각각 4)부터 8)까지로 하고, 같은목에 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같은목 6)(종전의 5)) 중 "생선횟집"을 "휴게음식점,일반음식점,제과점및 쇼핑센터"로 하고,같은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같은조 제6호 각목외의 부분중 "어항개발계획"을 "어항개발기본계획"으로 한다.

- 3) 귀어업인 및 외국인근로자 등 수산업종사자의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
- 5의2 "어항배후지역"이란 어항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어항의 부가 가치와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어항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 하기 위하여 제17조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

제7조제4항 중 "어항개발계획"을 "어항개발기본계획"으로 한다.

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・군관

리계획의 결정(도시·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,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,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

18. 「관광진흥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, 같은 법 제52 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,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

제17조제1항 중 "지정한다"를 "지정하며, 어항배후지역의 경우에는 방재(防災), 관광·레저, 수산물 유통 등 어항배후지역이 수행하는 특정기능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어항 및 어항시설"을 "어항, 어항시설 및 어항배후지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"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"을 "어항,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 또는 어항배후지역"으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중 "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"를 "어촌관광구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어항구역"을 "어항구역(어항배후지역을 포함한다)"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 중 "어항개발계획"을 "어항개발기본계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"어항개발계획을"을 "어항개발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"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"어항개발계획"을 "어항개발기본계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"어항개발

계획"을 각각 "어항개발기본계획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어항의 여건이 변하여 어항개발계획"을 "어항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, 어항의 여건 변화 또는 어항의 효율적 개발·관리·운영 등을 위하여 어항개발기본계획"으로하고,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"어항개발계획"을 "어항개발기본계획"으로로하다.

제20조의 제목 중 "어항개발계획"을 "어항개발기본계획"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어항개발계획"을 "어항개발기본계획"으로 한다.

제21조의 제목 중 "어항개발계획수립"을 "어항개발기본계획수립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중 "어항개발계획"을 각각 "어항개발기본계획"으로 한다.

제22조 중 "어항개발계획"을 "어항개발기본계획"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"를 "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어항개발사업계획"을 "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본문 중 "허가를"을 "승인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어항개발계획"을 "어항

개발기본계획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"을 "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"으로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)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지정권자가 고시한다.

제24조제5항 중 "어항개발계획"을 "어항개발기본계획"으로 한다.

제25조의2제2항 중 "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"을 "제23조제4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"으로 한다.

제27조제2항 전단 중 "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제23조"를 "제23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"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"을 "지방어항,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"으로 하며, 같은 항제2호 중 "국가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"을 "국가어항,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어촌정주어항"을 "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"으로 한다.

제35조제1항제1호 중 "시장·군수"를 "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"해양수산부령으로"를 "전문인력, 기술·장비 등 어항의 유지·관리·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"로 한다. 제38조제5항 중 "어항개발계획"을 "어항개발기본계획"으로 한다.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자에게는"을 "자와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"으로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사용료 또는 점용료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일당 10만분의 1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금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「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 시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나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다. 제45조제8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8. 기자재 창고 등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행위
 - 9. 허가받지 아니한 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・채취하는 행위
 - 10.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취사·야영,

물놀이 또는 상행위 등 어항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6조의2(출입통제)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.
 - 1. 어항구역 내 방파제, 호안,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
 - 2.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
 -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,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.
 - ③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.
 - ④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60조제2항제4호 중 "제8호"를 "제9호까지 또는 제11호"로 한다.

제6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- 4.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자
- ④ 법 제45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관리청의 허가받지 아니한 취사·야영, 물놀이 또는 상행위 등 어항 이용

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"어항시설"이란 어항구역 안	5
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	
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	
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	
수산부장관, 광역시장·도지	
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	
•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	
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	
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	
제17조에 따라 지정・고시한	
것을 말한다.	<u>.</u>
가. 기본시설	가
1) (생 략)	1) (현행과 같음)
2) 안벽(岸壁)・ <u>물양장(物</u>	2) <u>소형선부두</u>
<u>揚場)</u> ・계선부표(繋船浮標)	
・계선말뚝・잔교(棧橋)・	
부잔교(浮棧橋)・선착장・	
선양장(船揚場) 등 계류시	
설(繫留施設)	
3) (생 략)	3) (현행과 같음)

- 나. 기능시설
 - 1) 2) (생략)
 - 3) 어선 <u>건조장·수리장</u>, 어구 건조장, 어구 제작장 ·수리장, 선양시설, 야적 장, 기자재 창고 등 어선· 어구 보전시설

4) ~ 11) (생 략)

다. 어항편익시설

1) • 2) (생 략)

<신 설>

- <u>3)·4)</u> (생 략)
- 5) 지역특산품 판매장,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
- 6) 7) (생략)

라. (생 략)

<신 설>

나
1) • 2) (현행과 같음)
3) <u>건조장·수리장·</u>
<u> 검사장</u>
4) ~ 11) (현행과 같음)
다
1) • 2) (현행과 같음)
3) 귀어업인 및 외국인근
로자 등 수산업종사자의
주거시설 및 교육시설
<u>4)·5)</u> (현행 3) 및 4)와
같음)
<u>6)</u>
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제과
<u>점 및 쇼핑센터</u>
<u>7)·8)</u> (현행 6) 및 7)과
같음)
라. (현행과 같음)
5의2 "어항배후지역"이란 어항
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어항
의 부가가치와 수산업의 활성

화를 도모하며 어항 이용자에

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

6. "어항개발사업"이란 제19조 에 따른 <u>어항개발계획</u>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
가. ~ 라. (생 략) 7. ~ 10. (생 략)

- 제7조(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) ① ~ ③ (생 략)
 -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 ·군수·구청장은 어촌종합개 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 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배후어촌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8조(인가·허가 등의 의제) 제7 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 사업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,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협 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 음 각 호의 허가·인가·면허

제17조 따라 지정된 지역을
<u>말한다.</u>
6
<u>어항개발기본계획</u>
<u>.</u>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7. ~ 10. (현행과 같음)
제7조(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
수립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4
<u>어항개발기본계획</u>
⑤ (현행과 같음)
제8조(인가·허가 등의 의제)

· 승인 · 동의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,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・인가・면허・승인 ·동의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.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」 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개 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 88조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 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 가

2. ~ 17. (생 략) <신 설>

-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 시 · 군관리계획의 결정(도시 ·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 우에 한정한다), 같은 법 제5 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,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·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 른 도시 •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
 - 2. ~ 17. (현행과 같음)
 - 18. 「관광진흥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,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, 같은 법 제 54조에 따른 관광지 · 관광단 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

제17조(어항 등의 지정・변경 및 제17조(어항 등의 지정・변경 및

해제)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·종류· 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 고,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, 시설의 명 칭·종류·위치를 정하여 <u>지정</u>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<u>어항 및 어항</u> 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.

③ ~ ⑥ (생 략)

⑦ 지정권자는 <u>어항 또는 어항</u> <u>구역 밖의 어항시설</u>을 지정· 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해제) ①
<u>지정하</u>
며, 어항배후지역의 경우에는
방재(防災), 관광・레저, 수산물
유통 등 어항배후지역이 수행
하는 특정 기능 및 구역을 정
하여 지정한다.
② <u>어항, 어항시</u>
<u>설 및 어항배후지역</u>
<u>.</u>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<u>어항, 어항구역</u>
밖의 어항시설 또는 어항배후
지역
제18조(<u>어촌관광구역</u> 설정 등) ①
<u></u>
항구역(어항배후지역을 포함한
다)

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.

② · ③ (생 략)

제19조(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)

-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 의 시설 및 이용 현황, 어항시 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 · 점 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 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 계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 수 · 구청장과 협의하여 둘 이 상의 지방어항 ·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 다.
- ② 제1항에 따른 <u>어항개발계획</u>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하고, <u>어항개발계획</u>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u>.</u>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19조(<u>어항개발기본계획</u> 의 수립
등) ①
어항개발기본계획을 10년 단위
<u>로</u>
시체계에게
<u>어항개발기본계획</u>
계획
^
획

·

- 1. ~ 5. (생략)
- ③ 지정권자(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<u>어항개발계</u> 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, 제20조 및 제2 1조에서 같다)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<u>어항개발계획을</u>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하려는 어항의 배후 어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
- ④ (생 략)
- ⑤ 지정권자는 <u>어항의 여건이</u> 변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⑥ 지정권자는 <u>어항개발계획</u>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다 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

1. ~ 5. (현행과 같음) ③
<u></u> 어항개발
<u>기본계획</u>
어항개발기본계획
④ (현행과 같음)
⑤어항개발기본계
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
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,
어항의 여건 변화 또는 어항의
<u>효율적 개발·관리·운영 등을</u>
위하여 어항개발기본계획
⑥어항개발기본계
<u>획</u>

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0조(<u>어항개발계획</u>의 내용) <u>어</u> 저 <u>항개발계획</u>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제21조(<u>어항개발계획수립</u> 등의 제 협의) ① 지정권자는 <u>어항개발</u>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(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)와 협의 하여야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어항에 대한 <u>어항개</u>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
제20조(<u>어항개발기본계획</u> 의 내용)
어항개발기본계획
1. ~ 6. (현행과 같음)
제21조(<u>어항개발기본계획수립</u> 등
의 협의) ① <u>어항</u>
<u>개발기본계획</u>
2
어항개발
기본계획
<u> </u>

다.

③ (생략)

제22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제19 조제6항에 따라 <u>어항개발계획</u> 의 수립·변경에 관하여 고시 한 경우,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 사 및 대도시 시장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에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제2 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 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 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 다.

제23조(어항개발사업의 시행) ① (생 략)

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(국가기 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)가 어항개발사 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어항개발사</u> 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 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어항시설의 보수·보강 공사 중 다음 각

③ (현행과 같음)
제22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<u>어 항개 발기 본</u>
계획
· 제23조(어항개발사업의 시행) ①
(현행과 같음)
②
اد الدالد الحال
<u>어항개발사</u>
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
권자의 승인을 받아 어항개발
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
<u>다</u>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

1. · 2. (생략)

③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항개발사업(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)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④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<u>허가를</u>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

<u>.</u>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③
<u>어항개발사업 실</u>
시계획
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</u>
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
수립하거나 수립한 어항개발사
업 실시계획을 변경(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
경은 제외한다)한 경우에는 이
를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 하 미 제2하세 미리 스리티 시
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어
<u>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지정권</u>
<u>자가 고시한다.</u> ⑤
<u> </u>
<u> </u>

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 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여객승강용시설,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⑤ 어항개발사업은 <u>어항개발계</u> 획에 부합하여야 한다.
- ⑥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<u>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</u>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.
- 제24조(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 조 준 등) ① ~ ④ (생 략)
 -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지정권자는 이를 제19조에 따른 <u>어항개발계</u>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25조의2(토지등의 수용 또는 7 사용) ① (생 략)
 - ②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
 발계획(수용 또는 사용하려는
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

는 경우에 한정한다)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가 있으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가 있은 것으로 본다.

- ③ · ④ (생 략)
- 제27조(어항시설의 매각・양여)
 - ① (생 략)
 -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43조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 공단체 또는 제23조에 따라 어 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제49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」 제36조에 따라 토지를 매 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대 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정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

<u>.</u>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27조(어항시설의 매각・양여)
① (현행과 같음)
②
제23조
<u>.</u>
,

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.	
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	3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「국유재산법」 제55조 및	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	
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	
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	
양여할 수 있다.	
1. 국가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	1
해당 어항이 <u>지방어항 또는</u>	<u>지방어항, 어촌</u>
<u>어촌정주어항</u> 으로 지정된 경	<u>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-</u>
<u>Ŷ</u>	
2. 지방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	2
해당 어항이 <u>국가어항 또는</u>	<u>국가어항, 어촌</u>
<u>어촌정주어항</u> 으로 지정된 경	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-
<u>o</u>	
3. <u>어촌정주어항</u> 의 지정이 해제	3. <u>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</u>
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	<u>어항</u>
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경	
宁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35조(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)	제35조(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)
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	①
같다.	
1.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: 광역	1
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<u>시장ㆍ</u>	<u>시장・</u>

군수

- 2. (생략)
- ② (생 략)
- 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 · 관리 ·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1. 2. (생략)
- 3.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

④·⑤(생략)

제38조(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) 제38조(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) ① ~ ④ (생 략)

- ⑤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 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,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 여야 한다.
- ⑥ ~ ① (생 략)

제42조(사용료 등의 징수) ① (생 제42조(사용료 등의 징수) ① (현

	군수・구	<u>청장</u>
2.	(현행과	같음)

② (연행과 같음)
③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전문인력, 기술·장 비 등 어항의 유지 · 관리 · 운 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 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-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
어항개발기
본계획

⑥ ~ ① (현행과 같음)

략)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③ (생략) <신 설>

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 니하면 체납된 사용료 또는 점 용료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 난날부터 1일당 10만분의 1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 한다. 이 경우 연체금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3을 초 과하지 못한다.

----자와 제2항에 따른 연체 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

-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-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 시에 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나 연체료 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45조(금지행위) 누구든지 정당 제45조(금지행위) -----

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<신 설>

8. (생 략) <신 설>

- _____
- 1. ~ 7. (현행과 같음)
- 8. 기자재 창고 등 제2조제5호 나목에 따른 기능시설을 본래 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 거나 활용하는 행위
- 9. 허가받지 아니한 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·채취하는 행위
- 10.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취 사·야영, 물놀이 또는 상행 위 등 어항 이용질서를 저해 하는 행위

11. (현행 제8호와 같음)

제46조의2(출입통제) ① 어항관리 청은 어항구역 내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 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 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.

1. 어항구역 내 방파제, 호안,
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

제60조(벌칙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
- 1. ~ 3. (생략)
- 4.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 4. -----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

영향을 받는 장소

- 2.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 생하는 장소
-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 여 공고하고,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. ③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 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 을 하여야 한다.
- ④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 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렁으로 정한다.

제60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2
1. ~ 3. (현행과 같음)

- -----제9호까지 또는

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

5. ~ 7. (생략)

제62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③ (생 략) <신 설>

④ 제1항부터 <u>제3항</u>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<u>제11호</u>
5. ~ 7. (현행과 같음)
제62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2
1 0 (취레리 카스)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토게 기여의 측이하고
<u>통제 지역을 출입한 자</u> ③ (현행과 같음)
④ (1 8
반하여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
관리청의 허가받지 아니한 취
사・야영, 물놀이 또는 상행위
등 어항 이용질서를 저해하는
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<u>⑤</u> <u>제4항</u>